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2018. 7. 23. (월)

# 부 의 안 건



예 천 군



# 목 차

## 주 민 복 지 과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5

## 재 무 과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 21

## 환 경 관 리 과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 31

## 산 림 축 산 과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47

## 건 축 도 시 과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4

## 안 전 재 난 과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113



# 주 민 복 지 과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폐지이유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 설치 목적달성이 어렵고, 맞춤형급여의 교육급여사업과 유사·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함

##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도 사회복지과-15132(2015.08.28.)호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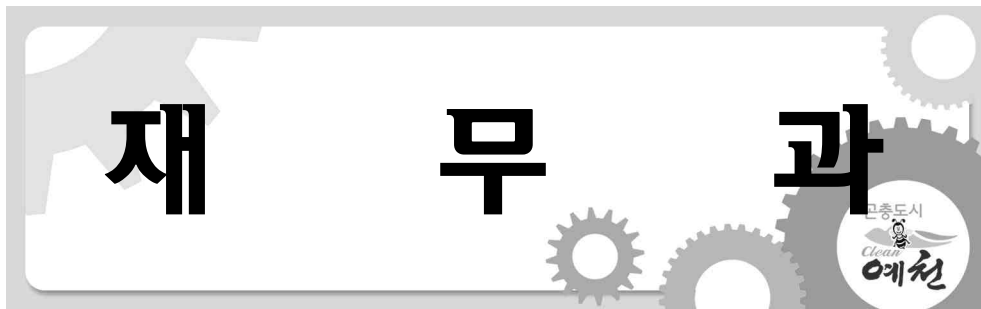
#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자산의 귀속)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예천군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으로 지방세의 세액공제 요건이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7. 12. 31.로 일몰 적용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연장 (2020.12.31.까지 3년 연장)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나. 정기분 지방세의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 제10조)

-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추가
-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78조, 제92조의2
- 「지방세법」 제112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5으”를 “25”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br>-----<br>-----<br>-----<br>----- <u>2020년 1</u><br><u>2월 31일</u> -----<br>-----<br>-----<br><u>2020년 12월 31일</u> -----<br>-----. |
|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u>25</u> 으로 한다.                                                                                                                                                             | ② -----<br>----- <u>25</u> -----<br>-----.                                                                                                                 |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 <u>2020년 12월 31일</u><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3. (생략)</p> <p>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p> <p>-----</p> <p>-----</p> <p>-----</p> <p>-----</p> <p>-----</p> <p>-----</p> <p>----- <u>2020년 12월 31일</u>-----</p> <p>-----</p> <p>-----</p> <p>-----</p> <p>-----</p> <p>-----.</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br/>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br/>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br/>다음과 같다.</p> <p>1. <u>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u><br/>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br/>150원</p> <p>2. <u>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u><br/>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br/>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p> <p>② (생 략)</p> |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br/>세액공제) ① -----<br/>-----<br/>-----.</p> <p>1. <u>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u><br/><u>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u><br/><u>따른</u> -----</p> <p>2. <u>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u> ---<br/>-----<br/>-----</p> <p>② (현행과 같음)</p> |

# 새마을경제과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출자 : 예천군수

## 1. 개정이유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의 일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에 도시가스 사업자를 추가(안 제5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추가

나. 보조금 지원범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추가(안 제6조제1호)

-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한하여 제2조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게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이 세대당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2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5조(지원대상) ① ~ ② (생 략)<br><br><u>&lt;신 설&gt;</u>                                                                                                                                        | 제5조(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br>같음)<br><br><u>③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br/>공급관 설치에 한하여 제2조제1호<br/>에 의한 사업자에게 시설비 일<br/>부를 지원할 수 있다.</u>                                                                      |
|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도시가스<br>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br>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u>지원<br/>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br/>최고 200만 원을 초과할 수<br/>없다. &lt;단서 신설&gt;</u><br><br>1. (생 략)<br><u>&lt;신 설&gt;</u><br>2. (생 략) | 제6조(지원범위) -----<br>-----<br>-----<br><u>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br/>경우에는 그 지원액이 세대당<br/>최고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u><br><br>1. (현행과 같음)<br>2. 제2조제4호의 공급관 설치비<br>3. (현행 제2호와 같음) |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후, 도비·군비·도시가스 공급자와 1.5:3.5:5 비율로 부담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한시적인 경비이며,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은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 추계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필요시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4. 작성자

- 새마을경제과 행정9급 이미란(☎ 650-6856)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제정 이유

-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3조)

-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범위 :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

### 나. 특례보증 보증재원 (안 제4조)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 다.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 (안 제5조)

-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2년간 이차보전

### 라.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6조)

- 주소 또는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았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지원 제외대상 (안 제7조)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제외대상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320백만원/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자가 주소 또는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주소 또는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제7조 관련)**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신청가능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5102                 | 여관업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
| 64992    | 지주회사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예: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다만,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및 융자금 이차보전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사업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근거 : 조례안 제4조, 제5조
- 지원규모 :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2억원 10년간,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연 3% 이자분을 2년간 보전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 연도<br>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br>~2027 | 합계     |
|-------------|-------|------|------|------|---------------|--------|
| 세입          | ○ 지원비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세출          | ○ 지원비 | 260  | 320  | 320  | 2,240         | 3,140  |
|             | 소계(b) | 260  | 320  | 320  | 2,240         | 3,140  |
| □ 총 비용(a-b) |       | -260 | -320 | -320 | -2,240        | -3,140 |

4. 재원조달 방안

(백만원)

| 연도<br>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br>~2027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도비       |  | -    | -    | -    | -             | -     |
| 시·군비     |  | 260  | 320  | 320  | 2,240         | 3,140 |
| 민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합계       |  | 260  | 320  | 320  | 2,240         | 3,140 |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새마을경제과 지방공업6급 신찬식(☎ 650-6236)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 연 200백만원 10년간 출연

○ 200백만원 × 10년 = 2,000백만원

### 2.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금 20백만원 한도, 3%이자분, 2년간 지원

○ 2,000백만원(출연금 10배 보증) × 3% × 19년\* = 1,140백만원

\* 2018년 이차보전금 : 2,000백만원 × 3% = 60백만원(해당연도)

2019년 이차보전금 : 4,000백만원 × 3% = 120백만원(전년도+해당연도)

2020년 이차보전금 : 4,000백만원 × 3% = 120백만원( " )

2021년 ~ 2027년 이차보전금 : 28,000백만원 × 3% = 840백만원( " )

### 3.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 2018년 : 200백만원 + 60백만원 = 260백만원

○ 2019년 : 200백만원 + 120백만원 = 320백만원

○ 2020년 : 200백만원 + 120백만원 = 320백만원

○ 2021년 ~ 2027년 : 1,400백만원 + 840백만원 = 2,240백만원

# 환 경 관 리 과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이상의 사업(상수도: 1일 생산 능력 1만톤 이상, 하수도: 1일 처리 능력 1만톤 이상)은 지방공기업(지방 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책임경영 및 경영 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나.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범위(안 제2조)
- 다.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구역(안 제3조)
- 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지정(안 제4조)
- 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안 제7조)
- 바.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7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48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151.71억원/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공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기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은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

장치의 설치 업무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한하여는 해당사업의 종료 시까지 제2조의 폐지조례에 의한다.

제4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①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재무상태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 ■ 상수도사업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급수수익(상수도요금)으로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 ※ 단,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와의 회계간의 부담구분이 전제됨(조례안 제9조, 제11조 참고)

####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추계상 급수수익은 요금 동결시('17년말 기준, 761원/㎥)의 추계액이므로 요금 현실화시 아래의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후

(단위: 천원/년)

| 구분 \ 연도     |          | 현황<br>(‘17년) | 1차년도<br>(‘18년) | 2차년도<br>(‘19년) | 3차년도<br>(‘20년) | 4차년도<br>(‘21년) | 합계          |
|-------------|----------|--------------|----------------|----------------|----------------|----------------|-------------|
| 세입          | ○ 급수수익   | 3,276,045    | 3,416,915      | 3,563,843      | 3,717,088      | 3,876,923      | 17,850,814  |
|             | ○ 기타영업수익 | 0            | 0              | 0              | 0              | 0              | 0           |
|             | ○ 영업외익   | 3,012,834    | 3,553,834      | 3,553,834      | 3,553,834      | 3,553,834      | 17,228,170  |
|             | 소계(a)    | 6,288,879    | 6,970,749      | 7,117,677      | 7,270,922      | 7,430,757      | 35,078,984  |
| 세출          | ○ 영업비용   | 8,857,765    | 9,101,868      | 9,356,192      | 9,621,168      | 9,897,248      | 46,834,241  |
|             | ○ 자본비용   | 1,908,117    | 1,912,993      | 1,915,007      | 1,917,105      | 1,919,292      | 9,572,514   |
|             | ○ 영업외비용  | 0            | 0              | 0              | 0              | 0              | 0           |
|             | 소계(b)    | 10,765,882   | 11,014,861     | 11,271,199     | 11,538,274     | 11,816,540     | 56,406,755  |
| □ 총 비용(a-b) |          | -4,477,003   | -4,044,112     | -4,153,522     | -4,267,352     | -4,385,783     | -21,327,771 |

\*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것으로 합계액 끝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2>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전

(단위: 천원/년)

| 구분 \ 연도     |          | 현황<br>(‘17년) | 1차년도<br>(‘18년) | 2차년도<br>(‘19년) | 3차년도<br>(‘20년) | 4차년도<br>(‘21년) | 합계         |
|-------------|----------|--------------|----------------|----------------|----------------|----------------|------------|
| 세입          | ○ 급수수익   | 3,276,045    | 3,416,915      | 3,563,843      | 3,717,088      | 3,876,923      | 17,850,814 |
|             | ○ 기타영업수익 | 0            | 0              | 0              | 0              | 0              | 0          |
|             | ○ 영업외익   | 3,012,834    | 3,553,834      | 3,553,834      | 3,553,834      | 3,553,834      | 17,228,170 |
|             | 소계(a)    | 6,288,879    | 6,970,749      | 7,117,677      | 7,270,922      | 7,430,757      | 35,078,984 |
| 세출          | ○ 영업비용   | 7,233,733    | 7,477,835      | 7,732,159      | 7,997,135      | 8,273,215      | 38,714,077 |
|             | ○ 자본비용   | 0            | 0              | 0              | 0              | 0              | 0          |
|             | ○ 영업외비용  | 0            | 0              | 0              | 0              | 0              | 0          |
|             | 소계(b)    | 7,233,733    | 7,477,835      | 7,732,159      | 7,997,135      | 8,273,215      | 38,714,077 |
| □ 총 비용(a-b) |          | -944,853     | -507,086       | -614,482       | -726,214       | -842,458       | -3,635,093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년)

| 구분 \ 연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도비      | 국비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군비      |        | 4,477,003 | 4,044,112 | 4,153,522 | 4,267,352 | 4,385,783 | 21,327,771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재원조달 방안 상의 조달금액(군비)은 공기업 전환 전인 현행과 같이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적자 분을 조달하는 것임

#### 5. 부대의견: 없음

#### 6. 작성자: 환경관리과 지방환경8급 최정인(☎ 650-6982)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아래의 상세내역은 요금 동결시 판매단가('17년말 기준, 761원/m<sup>3</sup>)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17년~'21년까지의 평균값)이므로 요금 현실화시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세입] 7,015,797천원

- 급수수익: 3,570,163천원
  - 상수도요금: 3,570,163천원
- 영업외익: 3,445,634천원
  - 타회계전입금: 3,445,634천원

### [세출] 11,281,351천원

- 영업비용: 9,366,848천원
  - 인건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9,366,848천원
- 자본비용: 1,914,503천원
  - 기존시설물 개량과 급수구역의 확장비 등으로 1,914,503천원

## ■ 하수도사업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급수수익(하수도요금)으로 지출(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  
※ 단,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또는 기타특별회계와의 회계간의 부담구분이 전제됨(조례안 제9조, 제11조 참고)

####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추계상 급수수익은 요금 동결시('17년말 기준, 271원/㎥)의 추계액이므로 요금 현실화시 아래의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후

(단위: 천원/년)

| 연도<br>구분    |          | 현황<br>(‘17년) | 1차년도<br>(‘18년) | 2차년도<br>(‘19년) | 3차년도<br>(‘20년) | 4차년도<br>(‘21년) | 합계          |
|-------------|----------|--------------|----------------|----------------|----------------|----------------|-------------|
| 세입          | ○하수도사용수익 | 571,451      | 596,024        | 621,653        | 648,384        | 676,264        | 3,113,775   |
|             | ○기타영업수익  | -            | -              | -              | -              | -              | -           |
|             | ○영업외익    | 2,836,348    | 2,836,348      | 2,836,348      | 2,836,348      | 2,836,348      | 14,181,740  |
|             | 소계(a)    | 3,407,799    | 3,432,372      | 3,458,001      | 3,484,732      | 3,512,612      | 17,295,515  |
| 세출          | ○영업비용    | 6,340,975    | 6,462,995      | 6,590,241      | 6,722,937      | 6,861,315      | 32,978,463  |
|             | ○자본비용    | 4,108,060    | 4,109,028      | 4,110,037      | 4,111,090      | 4,112,188      | 20,550,403  |
|             | ○영업외비용   | 3,658,570    | 3,658,570      | 3,658,570      | 3,658,570      | 3,658,570      | 18,292,850  |
|             | 소계(b)    | 14,107,604   | 14,230,593     | 14,358,849     | 14,492,597     | 14,632,073     | 71,821,716  |
| □ 총 비용(a-b) |          | -10,699,805  | -10,798,222    | -10,900,848    | -11,007,865    | -11,119,461    | -54,526,201 |

\*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것으로 합계액 끝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전

(단위: 천원/년)

| 연도<br>구분    |         | 현황<br>(‘17년) | 1차년도<br>(‘18년) | 2차년도<br>(‘19년) | 3차년도<br>(‘20년) | 4차년도<br>(‘21년) | 합계         |
|-------------|---------|--------------|----------------|----------------|----------------|----------------|------------|
| 세입          | ○급수수익   | 571,451      | 596,024        | 621,653        | 648,384        | 676,264        | 3,113,775  |
|             | ○기타영업수익 | -            | -              | -              | -              | -              | -          |
|             | ○영업외익   | 2,836,348    | 2,836,348      | 2,836,348      | 2,836,348      | 2,836,348      | 14,181,740 |
|             | 소계(a)   | 3,407,799    | 3,432,372      | 3,458,001      | 3,484,732      | 3,512,612      | 17,295,515 |
| 세출          | ○영업비용   | 3,513,957    | 3,635,978      | 3,763,224      | 3,895,919      | 4,034,298      | 18,843,377 |
|             | ○자본비용   | -            | -              | -              | -              | -              | -          |
|             | ○영업외비용  | 3,658,570    | 3,658,570      | 3,658,570      | 3,658,570      | 3,658,570      | 18,292,850 |
|             | 소계(b)   | 3,513,957    | 3,635,978      | 3,763,224      | 3,895,919      | 4,034,298      | 18,843,377 |
| □ 총 비용(a-b) |         | -106,158     | -203,606       | -305,223       | -411,188       | -521,686       | -1,547,861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년)

| 연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 구분 | 국비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도비 |        |            |            |            |            |            |            |
| 군비 |        | 10,699,805 | 10,798,222 | 10,900,848 | 11,007,865 | 11,119,461 | 54,526,201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10,699,805 | 10,798,222 | 10,900,848 | 11,007,865 | 11,119,461 | 54,526,201 |

- 재원조달 방안 상의 조달금액(군비)은 공기업 전환 전인 현행과 같이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적자 분을 조달하는 것임

#### 5. 부대의견: 없음

#### 6. 작성자: 환경관리과 지방환경8급 최정인(☎ 650-6982)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아래의 상세내역은 요금 동결시 판매단가('17년말 기준, 271원/m<sup>3</sup>)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17년~'21년까지의 평균값)이므로 요금 현실화시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세입] 3,459,103천 원

- 급수수익: 622,755천 원
  - 하수도요금: 622,755천 원
- 영업외익: 2,836,348천 원
  - 타회계전입금: 2,836,348천 원

### [세출] 14,364,343천 원

- 영업비용: 6,595,692천 원
  - 인건비, 민간위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6,595,692천 원
- 자본비용: 4,110,081천 원
  - 기존시설물 개량과 처리구역의 확장비 등으로 4,110,081천 원
- 영업외비용: 3,658,570천 원
  - 하수관거 정비 및 BTL사업 임대료 명목으로 매년 3,658,570천 원 비용처리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제정 이유

-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운영·관리(안 제5조)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나. 위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4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목재 관련 전문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 해당업무 담당과장

### 다. 위원회 회의 등(안 제15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위탁운영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요청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제22조
-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140,000천 원/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일부 반영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라 하고,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214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목재놀이 체험실, 목재전시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위탁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법인, 단체 등 포함)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다양한 지식제공
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3. 목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장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체험장 운영·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군수는 체험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다음 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7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9월까지 : 09:00 ~ 18:00
2. 10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 09:00 ~ 17: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및 사용료)**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관련 행사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관련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관련 행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관련 행사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7.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예천군 관내로 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관련 행사로 사용할 경우

**제10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1조(편의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제14조(위탁심사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필요시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목재 관련 전문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2.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산림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회는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하고 필요시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관리 운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시설물의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2. 시설의 긴급 개·보수해야 할 경우
3. 이용자에게 현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등

## 제4장 보 칙

**제18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제8조 관련)

| 구 분       |                | 내 용                        | 금 액    |                  | 비 고                                   |
|-----------|----------------|----------------------------|--------|------------------|---------------------------------------|
|           |                |                            | 개 인    | 단 체<br>(20인 이상)  |                                       |
| 목공<br>체험실 | 대(大)품<br>(점당)  | 전동톱, 우드버닝기 등<br>기계를 이용한 작업 | 3,000원 | 개인체험료의<br>30% 할인 | 체험프로그램<br>에 소요되는<br>각종 재료비<br>는 별도 부과 |
|           | 중(中)품<br>(점당)  | 망치 등 간단한 공구를<br>이용한 작업     | 2,000원 | "                |                                       |
|           | 소(小) 품<br>(점당) |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br>작업        | 1,000원 | "                |                                       |
| 목재놀이체험실   |                | 목재놀이도구를 사용한<br>놀이체험 공간     | 무 료    |                  |                                       |
| 목재전시실     |                |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br>정보 제공 공간   |        |                  |                                       |

- 목공체험실 이용시간의 경우 기본 4시간으로 하되 해당 시간 초과 시 추가 금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 체험장 단체 이용객 중 인솔자는 무료입장으로 한다.
- 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석유공자 등)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 지참 시 단체 할인 금액을 적용하며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체험 재료비는 납부)
-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허한다.

[별표 2]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제8조 관련]

| 시 설 명            | 사용기준     | 사 용 료    | 비 고                            |
|------------------|----------|----------|--------------------------------|
| 목공체험실<br>(본관 2층) | 1~4시간 이하 | 50,000원  | 기준시간 초과 시<br>시간당 10,000원<br>부과 |
|                  | 5~9시간 이하 | 100,000원 |                                |

- 사용시간 동안 일반 체험이용객은 그 사용을 제한한다.
- 시설물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용

###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점용면적 대비 관리·운영비
- 산출근거 : 목재문화진흥회의 연간 관리·운영 비용추산서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운영·관리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 소계(a)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50,000   |
| 세출          | 운영·관리비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700,000  |
|             | 소계(b)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700,000  |
| □ 총 비용(a-b) |        | △130,000 | △130,000 | △130,000 | △130,000 | △130,000 | △650,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도비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군비      |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700,000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140,000 | 700,000 |

- 매년 군비(공용 전기료 등) 조달 : 140,000천원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산림축산과 지방농업주사보 김동범(☎ 650-6574)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40,000천원

### 1. 일반운영비 : 57,900천원

- 사무관리비 : 27,800천원
  - 사무용 및 홍보용 용품 등 구입 : 7,600천원
  - 전기시설 정기점검 대행수수료 : 1,000천원
  -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2,400천원
  -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4,200천원
  - 자동방범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 오폐수정화관리 대행수수료 : 3,600천원
  - 정수기 임차 : 1,800천원
- 공공운영비 : 30,100천원
  - 전기사용료 : 21,600천원
  - 상하수도 요금 : 2,400천원
  - 인터넷 사용료 : 360천원
  - 전화 사용료 : 240천원
  - 오수처리 수거료 : 500천원
  - 소방시설 검사 및 점검수수료 : 1,000천원
  - 건물시설 및 장비 등 유지관리비 : 4,000천원

### 2. 재료비 : 20,000천원

- 목재체험 부자재 구입 : 20,000천원

### 3. 일반보상금 : 1,000천원

- 지도사 역량강화 교육 : 1,000천원

### 4. 시설비및부대비 : 4,000천원

- 조경관리 등 사업비 : 2,000천원
- 시설안전점검 등 관련 경비 : 2,000천원

### 5. 인건비 : 54,270천원 : 54,270천원

### 6. 자산취득비 : 2,830천원

- 전시물품구입 : 1,830천원
- 목재전문도서구입 : 1,000천원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개정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안 제17조)

-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 3만㎡)

### 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 내용
  - 도로, 하천, 철도, 취락지, 관광지 주변 이격거리 규정 등  
(현행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던 규정을 상위법 개정  
따라 조례로 정하기 위함)

### 다. 건축규제 완화(안 제55조 및 제62조)

-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의 건폐율 완화
- 지역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완화(안 별표 17, 별표 21)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허용

##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84조의2, 제85조, 별표 1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2조
-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2조, 제4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강화 및 완화

마.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5천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만제곱미터”를 “3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예천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을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3. “철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1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주택부지 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에 따른 발전시설의 설치에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의2 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로,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2 제2호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타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2호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7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을 카목부터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18 제2호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호 마목부터 사목을 바목부터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천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br>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br>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br>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br>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 어느<br>하나와 같다.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br>-----<br>-----<br>-----<br>-----<br>-----.                                |
| 1. 보전관리지역 : <u>5천제곱미터</u><br>미만                                                                                                                                  | 1. ----- <u>3만제곱미터</u><br>--                                                                     |
| 2. 생산관리지역 : <u>1만제곱미터</u><br>미만                                                                                                                                  | 2. ----- <u>3만제곱미터</u><br>--                                                                     |
| 3. ~ 4.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①<br>(생략)                                                                                                                                       | 제23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 따라<br>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br>·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br>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br>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br>관한 세부사항은 「 <u>예천군 개발<br/>행위(토지분할)허가 지침</u> 」에<br>따른다. | ② -----<br>-----<br>-----<br>-----<br>-----<br>----- 「 <u>예천군 개발행<br/>위허가 운영지침</u> 」 -----<br>-.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제24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u></li> <li><u>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u></li> <li><u>3.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u></li> <li><u>4.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u></li> <li><u>5.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세대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된다.</u></li> </ol>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 <p>6.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p> <p>7.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p> <p>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다만, 군도의 경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4.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다만, 10호 미만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각 주택부지경계에서 15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 <p>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에 따른 발전시설의 설치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p> <p>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울타리 설치,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55조(기타 용도지역·구역 등의 건폐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② (생략)</p> <p>③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u>2016년 12월 31일</u>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 <p>제59조의2(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br/>-----<br/>-----<br/>-----2018년 12월 31일<br/>-----<br/>-----<br/>-----.</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 <p>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br/> <u>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br/> 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br/> 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br/> 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br/>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br/>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br/>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br/> 을 허용할 수 있다.</u></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br/> 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br/> 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br/> 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br/> 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br/> 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br/>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br/>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br/> 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br/> 할 수 있다.</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br/>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br/> 법인<br/>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br/>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br/>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br/>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br/> 학재단<br/>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br/>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br/>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br/> 설립한 법인</p> |

| 현행                                                                                                                                                                                                                                                                                                                                                                                                                                                                   | 개정안                                                                                                                                                      |
|----------------------------------------------------------------------------------------------------------------------------------------------------------------------------------------------------------------------------------------------------------------------------------------------------------------------------------------------------------------------------------------------------------------------------------------------------------------------|----------------------------------------------------------------------------------------------------------------------------------------------------------|
| <p>④ ~ ⑤ (생략)</p> <p>제62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인 경우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6.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p> |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62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br/>-----<br/>-----<br/>-----.</p> <p>1. ~ 4.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

| 현행                                                                                                                                                                                                                                                                              | 개정안                                                                                                                                                                                                                                                 |
|---------------------------------------------------------------------------------------------------------------------------------------------------------------------------------------------------------------------------------------------------------------------------------|-----------------------------------------------------------------------------------------------------------------------------------------------------------------------------------------------------------------------------------------------------|
| <p><u>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p> <p><u>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u></p> <p><u>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u></p> <p><u>&lt;신 설&gt;</u></p> | <p><u>②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대지에 추가 건축을</u></p> |



| 현행                                                                                                                                                                                                                                                                                                                                                                      | 개정안                                                                                                                                                                                               |
|-------------------------------------------------------------------------------------------------------------------------------------------------------------------------------------------------------------------------------------------------------------------------------------------------------------------------------------------------------------------------|---------------------------------------------------------------------------------------------------------------------------------------------------------------------------------------------------|
| 제6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br>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br>·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br>률 완화) ① 영 제46조제2항에<br>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br>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br>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br>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br>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br>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br>"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br>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br>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br>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br>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br>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br>1. ~ 3. (생략)<br>② ~ ④ (생략) | 제6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br>서의 건폐율 등과 공지의 설치<br>·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br>률 완화) ① -----<br>-----<br>-----<br>-----<br>----- 국토교통부령-----<br>-----<br>-----<br>-----<br>-----<br>-----<br>----. -----<br>-----. |
|                                                                                                                                                                                                                                                                                                                                                                         | 1. ~ 3.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별표 3】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 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4)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별표 12】

###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별표 14】

###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별표 15】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물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 【별표 18】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  
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

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조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별표 20】

###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21】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비율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 당초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비율 삭제(안 제5조)

### 다. 공동주택의 감사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3조부터 제30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제85조 및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조치 : 70,000천원/년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반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단서 중 “지원금액은 소요사업비의 50%이하로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을 “5년”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감사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기간과 감사범위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감사계획 통보)** ①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                                                                                                                                                                                    |      |                 |  |
|-----------------------------------------------------------------------------------------------------------------------------------------------------------------------------------------------------------------------------------------------------------------|------------------------------------------------------------------------------------------------------------------------------------------------------------------------------------|------|-----------------|--|
| 대상단지                                                                                                                                                                                                                                                            | 단 지 명                                                                                                                                                                              |      | 전화번호<br>(관리사무소) |  |
|                                                                                                                                                                                                                                                                 | 주 소                                                                                                                                                                                |      |                 |  |
| 요 청 인<br>대 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 |                 |  |
| 동의현황                                                                                                                                                                                                                                                            | 동의인수<br>(동의율)                                                                                                                                                                      |      | 전체세대수           |  |
| 감사대상                                                                                                                                                                                                                                                            |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 선거관리위원회( )                                                                                                                                      |      |                 |  |
| 감사사유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br>•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br>• 제3호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br>• 제5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                        |      |                 |  |
| 감사 요청<br>사항·내용                                                                                                                                                                                                                                                  | ※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  |
| 감사제외<br>대상                                                                                                                                                                                                                                                      |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br>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br>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br>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br>5. 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요청인 대표자</span> <span>(서명 또는 날인)</span> </div> |                                                                                                                                                                                    |      |                 |  |
| 예천군수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요청인 연명부<br>2. 관련 증빙자료                                                                                                                                                           |      |                 |  |

【별지 제10호서식】

##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서명<br>또는 날인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21 |    |      |      |    |             |
| 22 |    |      |      |    |             |
| 23 |    |      |      |    |             |
| 24 |    |      |      |    |             |
| 25 |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u>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기준 및 방법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u>예천군수</u> (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u>지원금액은 소요사업비의 50%이하로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br/>-----<br/>-----<u>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u> -----<br/>-----.</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5조(지원범위) -----<br/>-----<br/>-----<br/>-----<u>보조금</u> -----<br/>-----<br/>-----<u>5년</u> -----<br/>-----.</p> |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제6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4. (생략)</p> <p>제4장 보칙</p> <p><u>&lt;신 설&gt;</u></p> | <p>제6조(지원대상) -----<br/>-----<br/>-----<br/>-----.</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4장 <u>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u></p> <p>제23조(감사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u></p> <p>2. <u>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u></p> <p>3. <u>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4. <u>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u></p> <p>5. <u>그 밖에 감사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제2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③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b>제27조(감사반 편성·운영)</b>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p> <p>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 <p><u>&lt;신 설&gt;</u></p> | <p><b>제28조(감사 실시)</b>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p> <p>④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u></p> <p><u>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u></p> <p><u>제2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u></p> <p><u>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u></p> <p><u>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u>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u></p> <p><u>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제30조(감사 결과 처리 및 통보)</u></p> <p>①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p> |
| <p><u>&lt;신 설&gt;</u></p> <p><u>제23조~제26조 (생 략)</u></p> | <p><u>제5장 보칙</u></p> <p><u>제31조~제34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u></p>                                                                                                                                                  |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지원 연간 건수 2건을 기준으로 건당 3~4천만원을 지원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추계하였음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보조금<br>지원사업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 ○            |         |         |         |         |         |          |
|             | 소계(b)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 총 비용(a-b) |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br>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도비       | 국비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기금   |        |        |        |        |        |         |
| 군비       |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350,000 |

### 5. 부대의견 : 없음

## 6.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
| 연 락 처  | 054 - 650 - 6340 |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기준                  | 산출내역                                       | 금액      |
|-------|---------------------|--------------------------------------------|---------|
| 계     |                     |                                            | 350,000 |
| 2019년 |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원~4천만 | - 30,000,000원 × 1개소<br>- 40,000,000원 × 1개소 | 70,000  |
| 2020년 |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원~4천만 | - 30,000,000원 × 1개소<br>- 40,000,000원 × 1개소 | 70,000  |
| 2021년 |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원~4천만 | - 30,000,000원 × 1개소<br>- 40,000,000원 × 1개소 | 70,000  |
| 2022년 |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원~4천만 | - 30,000,000원 × 1개소<br>- 40,000,000원 × 1개소 | 70,000  |
| 2023년 | - 공동주택 단지당 3천만원~4천만 | - 30,000,000원 × 1개소<br>- 40,000,000원 × 1개소 | 70,000  |



# 안 전 재 난 과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18년 7월 일

제 출 자 : 예 천 군 수

##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나. 지원범위(안 제4조)

- 지원범위는 가스 등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설치

### 다. 지원신청 등(안 제5조)

-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읍·면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군수에게 추천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18,000천원/년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형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난에 대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 재난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설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이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지원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세대원수                                                             |
|       | 주소                                                      |                                                                                                |      | 전화번호(휴대폰)                                                        |
|       | 지원대상자<br>구분                                             | <input type="checkbox"/> 수급자<br><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br><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br><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
|       |                                                         | 담당공무원<br>확 인 란                                                                                 |      |                                                                  |
| 지원시설  | <input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소방 |                                                                                                |      |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                                                              |
|------|--------------------------------------------------------------|
| 첨부서류 | 1.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사고 방지 및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3. 미첨부 사유

재난취약계층 가구는 2,332가구(2018.5월기준)에 대하여 단계적(5년)으로 설치 할 계획. 연간 18,000천원 소요됨에 따라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안전재난과 안전관리담당 김덕년(☎054-650-6551)